

# 2020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에 따라, 2020회계연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##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 (예비비)
-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(예비비의 사용)

## 예비비 사용사유

- 1심 판결금 가지급
  - 『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972 공사대금』 1심 소송에서 우리시가 1심 판결에서 약 95%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 진행중으로 1심 판결에서 집행을 명한 공사대금 판결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이 연12%를 감안,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340백만원의 예비비를 원고인 대림산업 외 5개사에 지급

## 예비비 사용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예산액	증감내역	
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
도시철도도목부	9호선 3단계 923 공구 청구소송	배상금 등 (305-01)	340,273	340,273	-

## 【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】

### □ 사건개요

-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972 공사대금
- 원 고 : 대림산업 외 5개사
  - 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화우
- 피 고 : 주위적 피고(서울특별시), 예비적 피고(대한민국)
  - 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지평
- 소 가 : 금5,524,145,673원
- 사건개요
  - 『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』 시공사인 대림산업(주) 외 5개사에서 총괄 계약기간 연장(1,015일), 6차수 계약기간 연장(121일) 및 차수별 계약사이 공백기(86일)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함

### 계약기간 및 계약사이 공백기

- 총괄 계약기간 : 당초 '10.09.20 ~ '16.03.21, 변경 '10.09.20 ~ '18.12.31
- 6차수 계약기간 : 당초 '15.07.21 ~ '16.03.21, 변경 '15.07.21~'16.07.20
- 공백기 86일 : 7차 준공 후 공백기 72일('17.01.01. ~ '17.03.13.),  
8차 준공 후 공백기 16일('18.01.01. ~ '18.01.16.)

### ○ 진행경과

- 소장접수('19.4월) → 준비서면 제출('19.5월) → 1차 ~ 3차변론('19.7월)  
→ 감정인 지정('19.11월) → 감정결과 제출('20.4월) → 판결선고('20.8월)  
→ 판결금 가지급('20.9월)

## 소송결과

- 총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
  - 총괄 계약의 구속력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
- 6차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
  -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355백만원이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%로 제한함
-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
  - 공사현장 유지관리는 다음 차수별 계약의 이행 편의 및 준비를 위한 것으로 피고가 이로써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
## 판결금 지급현황

- 가지급금 지출
  - 지급일 : 2020. 9. 17.(목)
  - 지급금액 : 340,273,021원 (원금 319,602,389원, 이자 20,670,632원)
  - 재원부담 : 예비비
    - ※ 지급사유 : 원심 판결일로부터 연12%의 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## 향후계획

- 법률지원담당관 및 담당 변호사와 협조하여 2심 소송에 적극 대응